

2021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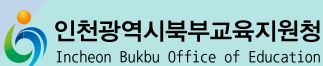
일시 : 2021년 6월 12일(토) 14:00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본관 3층)

주최



주관



후원



(재)한국이민재단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C O N T E N T S

인 사 말 • 도성훈 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청)	04
축 사 • 신은호 의장(인천광역시의회)	05
환 영 사 • 이상주 대표((재)플랜 한국위원회)	06
환 영 사 • 이병철 이사장(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07

발 제 포 럼

좌 장 이병철 이사장(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발제문 우리나라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며 / 채보근 본부장((재)한국이민재단)	08
발표문 2021 인천 난민의 날 기념 포럼 토론문 / 노태손 의원(인천광역시의회)	13
나는 대한민국 난민 신청자입니다 / 싸이드 무함마드 압둘가니 아흐마드(이집트 난민)	15
나에게 있어 난민이란? / 피권룡 학생(삼산중학교)	17
관용과 포용의 나라 대한민국 / 한유라(미얀마 난민)	21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과 관련하여 / 강석희(법무법인 홍인)	23
유엔난민기구와 난민 현지 통합 / 이예찬(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8

2021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

일시 : 2021년 6월 12일(토) 14:00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의회실(본관 3층)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역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를 향해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지역적 특성으로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주배경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다른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학생이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외연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념행사를 기회로 함께 모인 기관들이 협력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오늘 기념행사를 바탕으로 난민 학생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동아시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입니다.

2021년 난민의 날을 맞아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어울림 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이병철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경의 시간을 거쳐 한국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난민 여러분에게도 이번 행사가 따뜻한 위로이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난민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은 한때 ‘난민의 나라’였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을 떠난 망명객들이 모여 세운 망명정부의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당시의 망명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유엔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국의 구호를 위해 유엔 한국 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을 구성했습니다. 지금의 유엔 난민기구의 모태라 불리는 운크라(UNKRA)의 탄생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서 난민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숙명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박해받는 곳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인천을 찾은 난민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맞닿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에 온 난민을 품은 어울림이끌림의 외침이 인천 전역에 큰 울림으로 전해지길 나직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선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아동들과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또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도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국의 정부로부터의 보호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미등록 아동들과 여성, 그리고 난민들의 경우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한 해였을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회와 각계각층의 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이라는 주제로 난민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역경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난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는 데 플랜코리아가 역할을 수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습니다.

특히, 1973년 스페인 내전으로 고통받던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고,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인 유럽 전역의 전쟁고아를 도왔으며, 우리의 아픈 역사인 한국전쟁 직후 “양친회(養親會)”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동들을 도운 플랜의 역사를 생각할 때, 플랜은 오늘날에도 난민(Displaced People&Refugee) 아동의 인권과 보호에 앞장설 준비와 노력들을 하고 있어 더욱더 특별한 행사로 다가옵니다.

본 행사를 통해 플랜은 함께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및 기관들과 더불어 한국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선택한 난민 아동들을 위한 권리 개선과 보호활동을 진행하며, 세계 곳곳에서 모든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플랜 한국위원회
대 표 이 상 주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안녕하십니까? 2021년 세계 난민의 날 기념행사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 포럼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는 2018년 현재 2,000만여 명의 난민이 있으며, 중동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예멘 내전, 최근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내전 상황 등으로 난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 2월말 현재 7만 여명의 난민 신청자를 접수하였으며, 난민 인정자 수는 1천여명, 인도적 체류자는 2천3백여명이며 난민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 3,400여명입니다. 본 조합에서는 2015년부터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난민 가정 및 아동·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는 것은 더욱 뜻이 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재)플랜 한국위원회, UNHCR 한국대표부, 한국이민재단, 인천발전협의회 등 함께 참여한 모든 기관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 병 철

〈제21회 난민의 날 기념 포럼〉

우리나라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며

채 보 근 본부장((재)한국이민재단)

I. 들어가며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아프리카통일기구와 협의하여 제정한 세계 기념일로 6월 20일은, 난민의 날이다. 이는 난민협약 채택 50주년을 맞은 2000년 제정되었다. 이미 이전에도 동유럽에서는 6월 16일을 국제 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었고, 아프리카통일기구에서는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기념해왔다, 2021년 올해는 난민의 날을 기념한지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는 2018년 현재 2,000만여 명의 난민이 있으며, 중동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예멘 내전, 최근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내전상황 등으로 난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여, 2021. 2월말 현재 총 71,449명의 난민신청자를 접수하였으며, 난민 인정자 수는 1,098명이고, 시리아, 예멘, 미얀마 등 전쟁국가로부터 입국한 인도적 체류자수는 2,378명으로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 3,476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난민신청 접수 이후 인민인정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2~3년 정도 걸리며, 난민신청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취업을 허가하고 있어, 난민신청은 사실상 국내에서 취업하기 가장 용이한 비자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등 난민관련자(이하 '난민'으로 통칭)를 위한 별도의 사회통합정책은 없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난민이 사회통합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난민심사 불허 결정에 따라 곧 본국으로 떠나야할 사람들로 인식하여,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사회통합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난민 인정자들은 난민신청자 중 2~3년의 난민인정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을 받은 소수인 3% 정도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낮아 사회통합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인도적 체류자들은 전쟁국가로부터 입국하여 전쟁이 끝나면 곧 본국으로 돌아 가야할 대상으로 분류되어, 이들 또한 사회통합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난민 즉,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등은 합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재한외국인으로서 이들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이다.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21회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과 난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난민 관련 현황

1. 세계 난민 현황

2018년 현재

	난민 수(명)	비고
아프리카	6,335,412	
중동 및 북아프리카	2,692,709	
아시아·태평양	4,214,605	
유럽	6,474,562	
미주	643,274	
합 계	20,360,562	

출처 : 유엔난민기구(UNHCR) 홈페이지

2. 우리나라 난민 현황 ¹⁾

가. 난민 신청자 현황

구분	1차					이의신청			
	신청	심사종결				신청	심사종결		
		소계	심사결정	직권종료	자진철회		소계	심사결정	자진철회
계	71,449	58,046	41,226	11,398	5,422	30,662	25,658	24,732	926

나. 사유별 난민신청 현황

구분	소계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구성원	인종	국적	기타
계	71,449	16,955	12,918	7,274	3,862	388	30,052

다. 난민심사 결과

구분	심사완료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소계	인정	인도적체류	인정률	보호율	
계	36,222	3,476	1,098	2,378	3.0%	9.6%	32,746

1)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2월말 현재 난민관련 통계

Ⅲ.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1. 현행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²⁾

가. 조기적응 프로그램

국내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초기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생활 법률, 정보, 체류목적에 따른 외국인들에 대한 준수해야 할 사항 등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기초 15시간, 한국어 1단계부터 4단계 까지 각 단계별 100시간 총 400시간, 고급 단계인 5단계 기본 50시간(영주) 및 심화 20시간(국적), 총 485시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0년 현재 전국 347개 교육기관을 통해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 난민센터 기초생활 프로그램

영종도에 소재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일명 난민센터)에서 난민신청자 중 난민신청 6개월 이내인 자들 중 주거 및 생활이 곤란한 자들에 대해 한국어, 기초생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정착난민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국어, 국내생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라. 이민자네트워크 활동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이민자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민자네트워크에 가입하여 민원안내, 통번역 등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며 이민자로서 국내정착에 자긍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 사회통합협의회³⁾

재한외국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는 지역의 명망가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을 모집하여 사회통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⁴⁾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이민자사회통합) 참조

3) 출입국관리법제41조(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2014. 12. 30.신설)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인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행사를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2. 난민 사회통합 방안

가. 제도적 방향

1) 난민신청자를 위하여

● 조기적응프로그램 제공

국내 장기 체류할 모든 외국인들에게 초기 3개월 이내에 국내 법률, 생활 정보, 체류목적에 따른 준수 사항 등 3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난민신청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별도 구성하고, 난민신청 접수 시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최초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 미이수자에게는 3개월 체류기간을 부여하여, 난민신청자들이 초기에 사회통합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제공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난민신청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사회통합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 난민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는데, ‘난민신청 6개월 이후 취업 허가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한 자들에게 체류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한국어 2급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난민인정자를 위하여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난민인정자는 향후 국내에서 영주권,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자들이 대부분임에 따라, 국내에서 필수 사회통합대상로 분류할 수 있는 자들로, 난민인정에 따라 거주비자를 부여할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비자 체류 기간을 2년, 미이수자에게는 체류기간을 1년으로 차등 부여하여, 난민인정자에게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3) 인도적 체류자를 위하여

인도적 체류자는 전쟁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할 대상자이나, 사실상 국내 장기체류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4급 이수한 자에게는 현재의 체류기간 1년을 2년으로 상향해서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나. 사회단체 실천 방향

1) 성인 대상

위에서 제시한 제도적 개선과 관계없이 사회단체에서는 난민을 위한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난민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별 대표성이 있는 난민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고 모임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수요를 발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슬람 및 불교문화 공감 프로그램, 필수 생활 한국어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이들과 함께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 아동 대상

각 국가별 성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이들을 통해 아동들을 별도로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 등 그 간의 이민자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이들이 가장 공감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등 난민은 국내에서 합법적인 장기체류 외국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에 대한 적응지원정책 즉 사회통합정책 대상에서 사실상 소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난민의 사회통합정책을 위해서는 일반 이민자들과 동등한 이민자라는 시각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사회단체는 정부의 제도 개선에 앞서, 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파악하여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난민의 날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난민이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정책에 참여토록 하여, 원활한 한국 사회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 시민, 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부터 실행하는 '첫걸음 시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참고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2월말 현재 난민관련 통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이민자 사회통합)
- 유엔난민기구(UNHCR) 홈페이지

2021 인천 난민의 날 기념 포럼 토론문

2021 인천 난민의 날 기념 포럼 토론문

일자 및 장소 : 2021. 6. 12.(토) 14:00~ / 시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토론자 : 노 태 손 의원(인천광역시의회)

- 우리나라의 난민 지원의 한계는 국민들의 편견과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부재의 한계에서 비롯됨.
-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난민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함.

난민이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2월 난민의정서, 1993년 3월 난민 협약이 발표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 의무를 가지고 1994년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며, 당시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 국가는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무부 난민정책과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20년 말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은 총 71,042건, 누적 난민 인정자는 총 1,084명으로 신청 대비 난민 인정률은 1.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정부에서 난민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난민인정자의 68.5%는 인도적 체류자로 지역의료 보험, 사회보장서비스, 교육 등이 주어지지 않고, 취업 시에도 매년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2018년, 내전을 피해서 예멘 난민들 560여 명 정도가 제주도로 입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 등 난민에 대한 개념이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선진적인 편이었고, 말레이시아와 제주도간의 직항편이 있는 점과 제주도의 경우 무사증제도를 통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했던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지위가 인정되면 5인 가족 기준 최대 월 138만원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난민을 위해 쓰인다.’, ‘난민들은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약 70여만 명의 국민이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동의하는 등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 후 제주도에서는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는 무사증제도를 없애고,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게 출도제한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멘인 484명이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난민 인정자 2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등 전체의 85.4%가

정식으로 제주도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는 결국 난민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난민자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편입니다.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민 인정자의 사회보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은 자들도 난민 인정자와 동일한 사회보장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및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개최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등의 노력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난민 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난민 친화정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난민 정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된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는 민관이 각각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협력해서 난민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멘에는 '집을 떠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원해서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박해를 받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서명하고 난민법을 제정했던 그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난민 신청자입니다.

싸이드 함마드 압둘가니 아흐마드(이집트 난민)

1. 이집트를 떠나오며

내 이름은 싸이드 무함마드 압둘가니 아흐마드(Sayed Mohamed Abdelghani Ahmed),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법학과 학사를 이수 후 상업에 종사했고, 저의 부인 라니야 무하마드 마흐르 일리야스는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집트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2013년 쿠데타를 일으켜 무함마드 모르시 이집트 대통령을 몰아냈던 알시시 등 군부세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생활 및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할 수도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었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살기 위해 낯선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2. 한국에서의 생활

2018년 조국 이집트를 떠나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함께 슬픔, 괴로움, 외로움, 서글픔, 답답함, 막막함 등 온갖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난민신청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보내고 있는 시간들.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서류 심사. 출입국 외국인 청의 난민심사 절차 지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으로 월세와 전기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의 연속. 어깨가 아픈 딸의 병원 진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 등 이렇게 난민신청을 하고 난 후 우리 가족의 상황은 별로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마지막 희망의 끈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이집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전한 생활은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난민신청을 위해 4년 동안 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점점 더 자라고 큰아이는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난민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하고 요로 감염증도 있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함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지금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게 되면 어깨가 아픈 딸의 치료에도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7,100만 명의 난민이 전쟁, 폭력 및 박해로 인해 강제 이주상태에 놓였고, 국경을 넘어 해외로 피신한 난민도 2,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난민이 왜 난민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난민들은 차별이나 폭력, 협박, 고문 등 심각한 박해의 위협을 피해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경험했다는 것은 낯선 나라에까지 와서 난민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률은 약 3.5%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난민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길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난민심사의 기준은 엄격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된다면 한국에서 정착하며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의 고용,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한 취업활동과 아이들의 교육문제, 특히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받고 있는 소외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소한 한국어 공부만이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지원이 되지 않아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난민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난민 당사자, 기업, NGO 등 모두가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난민을 보는 시선들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에게 특별한 시선이 아닌 따뜻한 관심을 주십시오.

난민은 특별한 존재가 아닌 그냥 여러분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대한민국 난민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 가족의 긴 여행을 끝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 난민이란?

피 권 룡 학생(삼산중학교)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뜻 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의 틀이 많이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난민에 대한 주제 덕분에, 저는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난민에 관해 다루는 기사들을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수 많은 기사와 영상 속에서 저의 눈길을 끈 것은 굶주린 아이를 안고 굳게 닫힌 철조망을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좁은 배 안에서 단속반을 응시하고 있는 저보다 어린 아이들, 불법 체류자라는 명칭 아래 아이와 강제로 떨어져야 하는 아버지, 튜브나 뗏목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가로막는 어떤 기자....

저는 이러한 기사들과 영상을 보며 왜 그들은 국가를 떠나서 목숨을 건 시도를 해야 할까? 왜 그들에게 우리는 단속과 발길질을 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뉴스 속에서 그들은 난민, 불법 체류자 등의 왤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용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미남인 어떤 배우는 난민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호소하고 또 어떤 이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난민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선별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궁금증에 저는 조사를 해보았고, 이제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본론

1. 난민의 의미

우리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민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은 사전적으로 정치, 경제,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망명한 특정 사회 집단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국가 또는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난민이란 단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를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속한 사회를 떠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선택 지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난민이 되는 구체적 사례

그렇다면 생명을 걸고 난민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중동의 극단적인 종교적 이념 차이로 인한 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아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난민들,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니 등 자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외로 도피할 수밖에 없던 망명 정치인들, 인종의 차이로 인한 비논리적 차별에 지쳐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떠나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타국으로 이주하는 사회적 소수자들 역시 대표적인 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우리 역사 속 난민

과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난민은 존재하였을까요? 답은 존재하였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고조선이 수용하였던 연나라의 유이민, 고려가 수용했던 발해의 유이민 등은 우리 민족을 이루었고, 조선 후기~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의 제국주의적이고 비인륜적인 행위에 의해 우리 민족의 다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간도,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타국으로 망명한 난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들 역시 난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고향을 떠나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들 역시 우리 역사 속의 난민입니다.

이처럼 난민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하여 왔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4. 난민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러면 난민은 수용해야 할까요? 저는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비단 인류애적이고 윤리적인 당위성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항해시대, 가장 먼저 황금의 시대를 맞았던 스페인 왕국은 이베리아 반도 재정복 운동, 속칭 레콩키스타 이후 당시 왕국의 경제, 재정적인 부분에서 주요 요직을 맡고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추방했고, 그 결과 스페인 왕국의 경제는 몰락하여 다시는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예시는 독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나치 독일은 우생학과 당시 독일의 경제적 줄지풍파(粹地風波)에 따른 유대인 혐오에 부리를 둔 비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독일의 뛰어난 유대인 출신 학자, 기술자, 기업인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춘추전국시대,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떠나 고조선으로 온 난민들은 고조선에 철기 문화를 들여왔고, 한반도의 철기 문화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망명을 택했던 온조와 비류는 백제와 미추홀을 건국하여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꽃피우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발해, 후백제, 신라의 유민들을 차별 없이 수용하였고 고구려+백제+신라+중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승화시켜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를 이룩했고 우리의 민족 문화를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고려는 앞선 경험을 토대로 벽란도와 같은 국제 무역항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려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난민의 수용이 수용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일제 강점기 간도+만주+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국민들은 활발한 독립 운동을 통하여 독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는 현재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천에 살다가 하와이로 이주한 주민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거액의 독립 운동 자금을 송금하였고, 인하대 학교(인천+하와이)를 건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많은 인재들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난민의 수용은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등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주변국들에 비해 인구가 부족한 국가는 내수시장 형성과 인구 증가로 인한 부국강병을 위해 난민들의 수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5. 난민으로서 성공 사례

그러하다면 난민으로서 성공한 사례 역시 존재할까요? 네, 이 역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6.25 당시 피난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어린 소년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며, 아프리카 출신 난민의 자식이었던 한 흑인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또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명 이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역시 독일의 반유대인 정책에 미국으로 망명한 난민 출신 과학자였으며, 『노트르담 드 파리 (Notre Dame de Paris)』, 『레미제

라블』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도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반대하다 국외로 추방돼 19년간 영국 섬 등을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정치 난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었던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아이폰을 탄생시킨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도 난민 출신의 위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난민 출신의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훌륭한 위인이 되어 국가의 국위를 선양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III. 결론

그럼 대체 어떻게 난민을 수용해야 할까요? 수용한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별 일정 범위(비율)의 지정, 난민의 희망 국가에 대한 순위 조사, 민간과 협조한 수용 범위 설정(ex. 위탁 가정 지정 등), 초기 정착을 위한 시설 정비 등을 제도화하고 선진국의 현황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난민 수용 선진국인 독일과 같이 난민의 안정적인 정착까지의 지속적인 지원금과 숙소, 식비의 제공을 통한 빠른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직업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과 난민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입견을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언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부터 재정립하여 조그마한 상처라도 줄 수 있는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현재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점점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보다 부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의 수용은 국가 발전을 꾀해야 하는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지구촌에 속하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측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용과 포용의 나라 대한민국

한 유 라(미얀마 난민)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한유라라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NLD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을 상대로 자동차, 화장품을 수출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1990년에 처음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05년에야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남편이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의 미얀마 사태를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얀마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정국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끊임없이 민주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 8월 8일을 기점으로 미얀마 전국에서 군부 타도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결국은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난민촌에서 1년을 지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으로 온 미얀마 정치 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컸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사회적 정체성이 가장 크게 구성되는 젊은 20대를 한국의 민주화를 보면서 한국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난민 인정을 받고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치 난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미얀마군부대사관”과 부평광장 등에 가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닮아있는 미얀마의 요즘 사태를 보면서 미얀마도 한국처럼 민주화된 나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에서 남편을 따라 한국까지 와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0년 큰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2~3년은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

‘한국어를 잘 못하는 부모를 가진 우리 아이를 제대로 교육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은 너무 많은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미얀마와는 다른 한국문화와 사회, 언어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없으니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고 나니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다짐을 수없이 하며 아이들 교육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해주는 곳 등이 있는지 저 혼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전히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느덧 큰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작은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일을 하느라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데도 스스로 학업과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우리 가족을 배려해 주며 아주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고 있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며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안전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일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을 하고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주 드뭅니다.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회, 선진 사회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관용합니다. 즉, 정치적, 종교적, 성적 입장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합니다. 성숙한 사회는 모든 나이, 성별, 종교, 인종 간에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숙한 사회이며, 선진화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민주화된 사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얀마의 혼돈 속에서 느꼈던 불안을 대한민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대한민국은 관용과 포용의 나라입니다.

사선을 넘어 한국의 품으로 들어온 난민들을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과 관련하여

강 석 희(법무법인 흥인)

I. 서론

발제문에는 난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재정착난민'이 있는 바, 먼저 재정착난민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이후, 재정착난민의 성인과 학생의 구체적 사회통합 방안에 관하여 토론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II. 재정착 난민의 의미와 현황

가. 난민의 재정착 제도

- (1) 난민의 재정착(Resettlement) 제도란, 난민이 위험한 환경을 피하여 도착한 1차 비호국에서 그 난민에게 영주권을 허락한 국가로 이주하여 정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착은 자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의 영토 내에 도달한 난민에 대해 이들을 제3국으로 이주하게 하여 제3국에서 보호하는 난민 보호제도이며 국제사회의 연대이자 책임분담이다.
- (2) UNHCR 재정착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019년에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 수는 2018년 보다 17% 증가한 1,400,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UNHCR이 35개국에 추천한 재정착 난민 수는 필요한 1,190,000명 중 75,200명으로서 2016년 163,200명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국한 성인 재정착난민도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7년까지 평균 21년 동안 난민캠프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법무부, 2018).

나. 재정착 난민의 현황

(1) 대한민국은 2015년경 태국 국경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정착하고 있는 미얀마 카렌족 4가정 22명이 재정착난민으로 인정하였다. 이들은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6개월간 한국어, 국내생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얀마 카렌족은 3기까지 입국하였는바, 현재 16가정 93명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4기부터는 미얀마 카렌족이 아니며, 부평이 아닌 김포에 거주하고 있다).

(2) 인천광역시 부평에 거주한 재정착 난민의 기수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인과 학령아동을 구분하였다).

구분		성인	영.유아	초	중	고	합계
1기	4가정/25명	11명	5명	7명	-	2명	25명
2기	7가정/38명	17명	7명	4명	5명	5명	38명
3기	5가정/30명	11명	4명	8명	4명	3명	30명
합계		39명	16명	19명	9명	10명	93명
부모+성인 39명			자녀 54명				

III.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의 통합사례관리

가. 통합사례관리의 필요성

(1)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어울림이끌림’이라 함)은 2013년경 여성가족부인가 8호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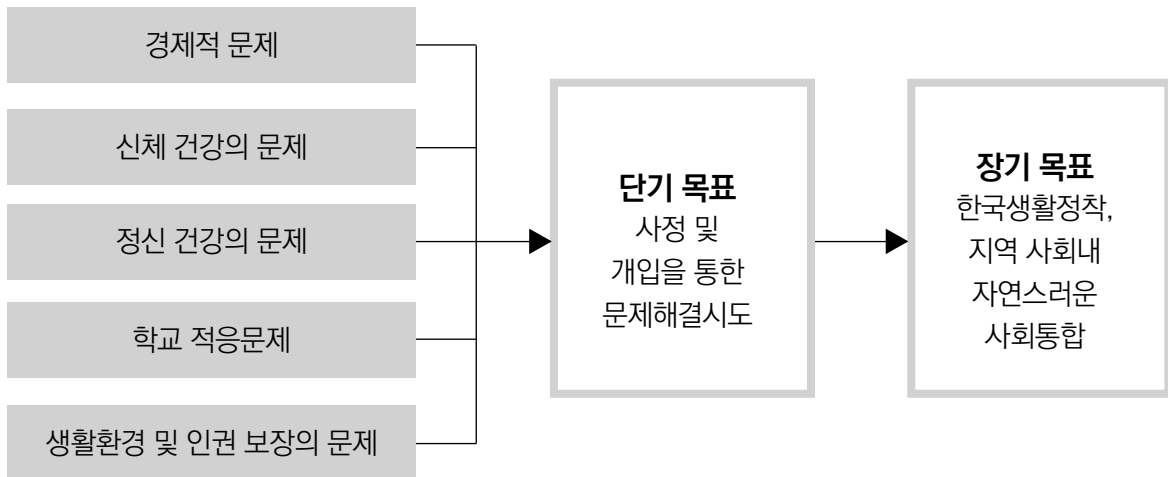
(2) 재정착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장하나, 부평지역에 정착한 재정착난민에 대한 현실적인 케어는 접근성과 인력운용의 면에서 결국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어울림이끌림은 2016년경 재정착 난민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부평지역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생활멘토제도에 적극 참여하였고, 재정착난민들이 지역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3) 처음에는 생활멘토를 통하여 각 가정의 필요한 부분과 여러 불편한 부분들을 부분적이며 단편적인 해결

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나. 구체적인 통합사례관리방법

(1) 사례관리 목표



(2) 지역자원 네트워크 현황



(3) 난민 자녀 대상 사례관리(초, 중, 고)

사례관리 내용	프로그램 명	세부내용	목표
● 학교수업의 어려움 ● 친구들과 부적응 및 진로고민 ● 사회적 규범인지 부족 ● 억압과 차별로 인한 무기력 ● 사회문화 경험 부족	찾아가는 한글교실	주2회 한글교실 운영	한글 실력 향상으로 학교 적응력 발전
	컴퓨터 교실	주2회 컴퓨터 교실 운영	컴퓨터 실력 향상
	맛쭈쭈 봉사단 (미얀마 카렌족어로 '화이팅' 의 뜻을 가짐)	월1회 지역 안전캠페인 독거노인 음식 배달 등	자원봉사의 의미와 자원봉사자의 역할형성
	하울림 합창단	매주 1회 연습/ 정기공연 각종 공연 연계 및 대회 입상	하모니를 통한 자존감향상
	여름방학 특강	북부교육지원청 주관 특강 및 정기적인 멘토링(현직교사 재능기부)	현직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인 관계형성, 부족한 학습 보충
	진로체험 및 탐색	여름방학기간 5개 직업체험(바리스타, 목공예, 요리사, 제빵사, 미용사)	직업탐색을 통한 진로계획 기회제공
	개인별 학습지도	월, 수, 금 저녁시간 교육봉사자 연계	부진학습보충, 진로상담기회제공
	프로그램 연계	나도유튜버/캘리그래피체험 월별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연계 가정의 달 쿠키만들기체험	정서 및 문화체험의 기회제공
	장학금 연계	삼산경찰서 장학금(30만원) 한국마사회 장학금(100만원)	경제적 어려움 해소, 정서적 안정 도모, 학습동기 향상

(4) 부모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재정착난민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처음 재정착난민이 정착할 때 이들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결하였다. 이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직도 경험하고 있다. 어울림이플림에서는 이들의 일자리를 위하여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방수도장업체등에 연결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국 부모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통하여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IV. 결론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점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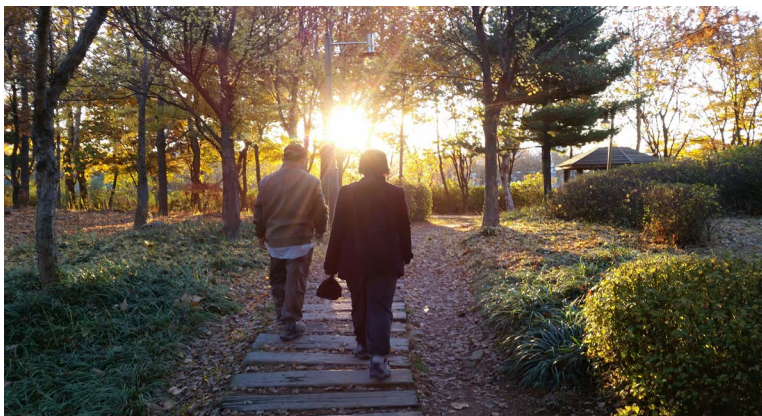
첫째, 재정착난민들의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역 종교단체, 사회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단순히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급여나 4대 보험,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정착난민 학부모들에게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사례관리 결과 난민학생들의 주된 어려움은 부모의 생활에 연동되어 있었다. 취업한 부모들은 주 6일 근무와 한국어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심지어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더 많은 생계비 지출로 추가근무를 하기에 한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저임금 노동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는 자녀에게 빈곤 대물림이 예상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한국어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착난민 학생들의 인생설계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난민학생들의 경력과 꿈에 기초하여 구조, 협력, 필요와 관련해서는 제도권(학교) 밖에서 재정착난민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NGO들을 참여시켜 진로 및 진학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에 재정착난민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착 난민들이 정착해야 할 곳은 중앙이 아닌 인천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업무가 지방행정 업무라는 것이 명시 되어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지자체 ‘난민지원 조례 제정’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난민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정업무도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예산 할당 등의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재정착난민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고립이 가중되지 않고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필요함. 즉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 할 수 있는 난민센터 설치가 필요함.



재정착난민 1기 쿠투 부부가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는 회사로의
첫 출근 풍경.
이들의 앞날에 서광이 비추기를 바란다.

유엔난민기구와 난민 현지 통합

이 예 찬(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주요 용어

난민 (Refugee)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

비호신청자 (asylum-seeker)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사람

난민 인정자

난민 신청자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 (협약 난민)

- Well-founded fear (RISK) of being persecuted (SERIOUS HARM)
- For reasons of:
 - Race
 - Religion
 - Nationality
 -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 Political opinion
- Outside the country and no government protection
-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심각한 위험)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위험)이 존재.
- 다음의 이유로 인해 존재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 정치적 의견
-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받기를 원치 않음.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Forced to leave (or remain outside) their homes or places of habitual residenc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or in order to avoid the effects of
 - armed conflict,
 - situations of generalized violence,
 -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 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 and **who have not crossed an international border***.
- 아래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러한 결과로 인해, 고향 또는 주거소를 강제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 (혹은 그 외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 중,
 - 무력충돌,
 - 일상화된 폭력사태,
 - 심각한 인권침해, 또는
 - 인재 또는 **자연 재해***
- 국경을 넘지 않은 자*

* = major difference between refugee and IDP

* = 난민과 국내실향민의 주요차이점



귀환민

Returnees

- Formerly displaced who have returned home (refugees or IDPs)
- Accompanied by UNHCR to ensure return is sustainable:
 - Resolve property concerns /disputes
 - Reintegration
 - Reconciliation
 - Reconstruction
- 실향 상태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난민 또는 국내실향민)
- 지속가능한(안전한) 귀환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의 조력이 동반됨.
 - 재산권/분쟁 해결
 - 재통합
 - 화해
 - 재건



법률 체계

Legal Framework

- Art. 14,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UNHCR's Mandate

- UNHCR was establis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28 of 14 December 1950
- UNHCR provides international protection to refugees and seek permanent solutions to their plight
- Primary responsibility of States to identify and protect refugees
- 1950년 12월 14일 UN 총회 428호 결의안에 의거하여 설립
-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방안 모색
- 난민을 파악하고 보호할 책임은 1차적으로 각 국가에 있음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UNHCR's Mandate

- Only when States are unwilling or unable to protect asylum-seekers and refuge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UNHCR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that basic rights are respected
- UN agency: international, neutral, and humanitarian
- 국가가 비호신청자 및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제사회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맡게 된다.
- 유엔기구: 국제적, 중립적, 인도적



UNHCR's Mandate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What means protection?

- Access to safety
- Right not to be returned to a situation of danger (*non-refoulement*)
- Non-discrimination
- Respect for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ccess to justice, health care, education, documentation and other rights

보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안전으로의 접근권
- 위험한 상황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 (강제송환금지 원칙)
- 비차별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존중
- 사법절차, 의료, 교육, 신분증 및 다른 권리로의 접근권



현지 통합

Local Integration

현지 통합의 세 절차

1. 법적 절차
 - 비호국에서 난민의 권리를 확장해나가는 절차.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의 취득.
2. 경제적 절차
 - 비호국의 도움을 점차 덜 받아나가며 난민의 경제적 자립성을 확립해나가는 절차.
3. 사회·문화적 절차
 - 비호국에서 차별과 억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의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하는 절차.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Leave No One Behind



전사회적 접근 (Whole-of-society-approach)



현지 통합과 포괄적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현지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의 일할 권리
- 난민인정자의 귀화(시민권 취득)할 권리
-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무료 검사, 무료 백신 접종, 일부 난민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난민 신청자 처우

- 3-6개월 기타(G-1-5)체류자격
- 법무부 생계비 지원 가능
-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지원 신청가능
- 비전문직종 취업가능
- 교육

인도적체류허가자 처우

- 6개월-1년 기타 (G-1-6)체류자격
- 법무부 생계비 지원 가능
- 비전문직종 취업가능
-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지원 신청가능
- 교육



난민 인정자 처우

- 거주 (F-2) 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 배우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결합
- 사회보장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 급여
- 국민건강보험 가입
- 사회적응교육 및 한국어교육
- 직업훈련 지원
- 교육



참고 자료

-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최계영 역음,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2019.08.)
- 국가인권위원회, 인도적체류지위 보고대회 자료집 (2019.11.11.)
-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공동주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9.11.21.),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9995&types=9&searchtype=&searchstr=>
-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9.09.) (비공개 보고서)
- 유엔난민기구 난민 인정절차 편람 및 지침 (재발행본, 영문판) (2019.04.) <https://www.refworld.org/docid/5cb474b27.html>
- 유엔난민기구, 국제 난민 보호 및 국내 비호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 국회의원을 위한 지침 (2017) <https://www.refworld.org/docid/5a9d57554.html>



M E M O

2021 「세계난민의 날」 기념행사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